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34,616,167	22,038,485
일반회계	644,376,104	19,331,283
특별회계	90,240,063	2,707,202
공기업특별회계	75,574,689	2,267,2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893,012	806,7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738,306	892,14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943,371	568,301
기타특별회계	14,665,374	439,961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120,542	33,616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61,497	43,845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46,771	100,403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407,710	12,231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920,925	117,628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2,419,600	72,588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0,000	90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958,329	58,750

제 2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256,84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7 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